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140
----------	------

2022. 03. 3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II.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3140	2022.3.10.	2022.3.16.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2.3.31)	원안동의

I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1. 제안이유

가. 서울 공공한옥 중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를 통합하
여 사무 민간위탁 추진해왔으나, 정책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필
요에 따라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정책수행시설로 전환하여 직
영하고, '북촌문화센터'는 대시민 대상시설로써 전문적 운영이 지속적
으로 필요하므로 개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

나. 위탁개요

- 대상시설 : 북촌문화센터
- 소재지 : 종로구 계동길 37 외 1
- 시설규모 : 대지 1,131.5 m^2 , 연면적 362.32 m^2
- 위탁기간 : 2년 11개월('23.2.1. ~ '25.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 소요예산(안) : 578백만원 ※ '22년 예산(통합운영): 800백만원

다. 주요 위탁내용

- 북촌의 장소성 및 한옥 콘텐츠를 반영한 체험, 공연, 전시, 교육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민과 함께하는 공정관광 캠페인, 마을여행, 해설프로그램 운영
- 전통(현대)공예, 생활예술 등 관련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 시민한옥학교, 한옥캠프, 북촌인문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민간위탁 사업 일부 변경 신규 위탁 추진계획 방침('22.2.9.)

마. 필요성

- '20년부터 시작한 북촌도시활성화사업 본격 착수에 따른 정책적 거점시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공간 매입 확보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한옥 시설 활용이 타당
- '17년 2월부터 북촌문화센터와 함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온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현재 북촌활성화사업 일부 기능과 민간위탁사업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어 공간의 활용도 혼재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하
-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북촌활성화사업 거점시설로 전환하여 정책시설로 직영하는 한편, 북촌문화센터는 민간위탁 지속 추진 통해 북촌 체험·홍보·교육시설로써 전문적 관리 및 활용 강화

바. 기대효과

- 시의 정책적 기능과 대시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능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북촌 및 한옥의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적극적인 시설 운영 통해 북촌문화센터 서비스 질 향상 등 시민만족도 제고 지속

3. 추진일정

가. 추진경위

- 제270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6. 9월
- 최초 위탁 운영 개시(3년) : '17. 2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82.18점) : '19. 6월
- 제290회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별도보고 : '19. 11월
- 재계약 운영 개시(3년) : '20. 2월~
- 사업 일부 변경 및 신규 위탁 방침 수립 : '22. 2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 : '22. 2월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	사무	신규(공모)	2년 11개월	적정

나. 향후계획

- 제306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 : '22. 3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2. 6월
- 신규위탁 공모 및 수탁사 선정 : '22. 7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수인계 : '22. 9월
- 북촌문화센터 신규 수탁기관 운영 개시 : '23. 2월~

4. 예산조치 등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조직담당관 심의('22.2.22.)

○ '22년 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동의안 제출배경

○ 이 동의안은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교육관,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사무의 민간위탁 협약이 만료('23.1.31.)될 예정임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 내용을 일부 축소하여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울 공공한옥¹⁾은 2022년 2월 기준 총 34개소²⁾가 있으며, 이 중 민간

1) 서울 공공한옥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을 말함.

2) 34개소 중 서울시 소유는 26개소, SH공사 소유는 7개소, SH공사와 서울시가 각각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공공한옥은 1개소가 있고, 서울시 소유 공공한옥 중 3개소는 현재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수공사가 진행 중임.(검토보고서 붙임 1 참고)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소³⁾ 중 “북촌문화센터 및 교육관”(이하 “북촌 문화센터(2개소)”),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4개소는 ‘2016년 9월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17년 2월부터 위탁 운영 중으로,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말 종료될 예정임.

<서울 공공한옥 현황>

구 분		계	전통공예 시설	문화전시 시설	주민이용 시설	주거체험 시설	준비중
소유	재산관리관						
계		34	9	11	8	3	3

자료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 민간위탁 4개소 중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향후 정책수행시설로 전환하여 직영하고, 북촌문화센터(2개소)는 대시민 대상시설로서 전문적 운영을 위해 개별 민간위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⁴⁾에 따르면,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⁵⁾ 또는 재계약⁶⁾시”, 또는 “기존 위탁사무의 중요내용⁷⁾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

3) 북촌문화센터 및 교육관,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및 쉼터, 흥건의 가옥과 배림가옥('21.1.1~'23.12.31)이 있음.

4)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7)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

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⁸⁾에 따르면,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되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 민간위탁 현황 및 변경(안)

- 현재 민간위탁 4개소의 민간위탁금은 8억원이며, 총 운영인력 20명으로 구성되어 각 공간별 체험, 교육,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시민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고, 한 개 업체가 통합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 그러나 이번 신규 민간위탁에서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의 경우,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그동안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부 기능과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병행되면서 공간 활용도 혼재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2020년부터 시작된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본격 착수에 따른 거점시설 수요증가에 대해, 새로운 공간 매입을 통한 확보보다는 기존의 공공한옥 시설을 활용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 이에 반해, 북촌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의 지속적 추진으로 북촌 체험·홍보·교육시설로서 전문적인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기준, 2021.10, p.17

<민간위탁사업 변경 추진(안)>(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북촌문화센터 민간위탁 지속 /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직영 전환

【 현재 】

【 변경 】

위탁시설	- 북촌문화센터 : 북촌체험 및 관광교육 거점 - 한옥지원센터 : 시민한옥교육, 한옥체험 거점 - 마을서재 : 작은도서관, 주민 커뮤니티 거점	⇒	- 북촌문화센터 : 북촌 및 한옥 체험, 교육 거점 * 한옥지원센터/마을서재: 주요 프로그램 북촌문화 센터로 이관 및 북촌 도시활성화사업 시설로 직영
위탁기간	최초위탁 : '17.2.1. ~ '20.1.31.(3년) 재 계약 : '20.2.1. ~ '23.1.31.(3년)	⇒	신규 위탁 : '23.2.1. ~ '25.12.31.(2년 11개월)
조직구성	총 20명 (상주 7, 비상주 4, 해설사 6, 사무보조 3)	⇒	총 13명 (상주 5, 비상주 3, 해설사 3, 사무보조 2)
사업비	800,000천원('22년 기준)	⇒	578,189천원('23년 기준)

- 이에 따라 신규 위탁사무가 시행되는 2023년 2월 1일부터 한옥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한옥 119 지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간 “한옥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오던 ‘한옥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은 북촌문화센터로 이관되어 계속 운영될 예정임.
- 마을서재는 북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영 관리를 통해 주민자치 공간으로 전환하고, 현재 운영 중인 행사 및 프로그램도 북촌도시재생센터에서 이관받아 운영할 계획임.

거점시설	운영방식		소유	규모(㎡)		주요 프로그램	
	기존	변경		대지	건물	기존	변경
북촌문화센터 (계동 105 외1) ※'18년 시설확장	민간위탁	민간위탁	SH공사 (계동 105) 서울시 (교육관) (계동 104-3)	1,131.5	362.32	북촌체험 및 관광교육 거점 - 홍보전시관 운영, 강좌운영, 문화행사 등 - 공정여행 캠페인, 북촌의 날 프로그램 등	북촌 및 한옥체험, 교육 거점시설로 운영 강화 - 기존 프로그램 유지 - 한옥지원센터 시민한옥 학교 프로그램 이관 운영
한옥지원센터 (계동 135-1)	민간위탁	직영	SH공사	405.3	142.15	-북촌도시재생지원센터 : 북촌활성화사업 <한옥교육 및 한옥체험 거점> - 시민한옥학교, 소목교실, 한옥캠프 등	- 북촌 도시재생지원센터 : 북촌활성화사업 - 시: 한옥119출동
마을서재 (계동 135-2,3)	민간위탁	직영	서울시	457.2	43.06	<주민 커뮤니티 거점> - 주민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주민전시 등	- 기존 프로그램 유지 -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하여 주민자치 운영

□ 신규 민간위탁 개요

○ 신규위탁 개요

- 위탁대상 : 북촌문화센터(2)
- 위탁기간 : '23.2.1. ~ '25.12.31.(2년 11개월)
- 운영방법 : 전문성 있는 단체(법인)에 사무 민간위탁
- 사업비 : 578,189천원('23년 기준)
- 위탁사무 : 북촌, 한옥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 북촌문화센터의 신규 민간위탁(사무형)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2년 11개월)이며, 위탁범위는 홍보전시관 및 강좌 운영, 문화행사, 공정여행 캠페인 등 북촌 및 한옥 체험 및 교육시설로서 민간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강화할 계획임.

- 조직 운영인력은 4개소 전체의 통합 운영인력 20명에서 13명(상주 7, 비상주 4)으로, 사업비는 8억 원('22년)에서 5억 7천8백만원('23년)으로 변경되었음. 위탁기관은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임.

<연도별 사업비용>

※ 사업비(과거 2년, 향후 3년)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8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46,945, 운영비 155,414, 사업비 215,914, 일반관리비 9,000, 부가가치세 72,727
2022년	8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54,070, 운영비 155,985, 사업비 217,218, 부가가치세 72,727
2023년	578,189	민간위탁금	인건비 253,370, 운영비 120,818, 사업비 141,132, 위탁수수료 10,306, 부가가치세 52,563
2024년	578,189	민간위탁금	인건비 253,370, 운영비 120,818, 사업비 141,132, 위탁수수료 10,306, 부가가치세 52,563
2025년	578,189	민간위탁금	인건비 253,370, 운영비 120,818, 사업비 141,132, 위탁수수료 10,306, 부가가치세 52,563

□ 종합의견

-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내용과 공간 활용 일부 조정 및 운영체제 전환 등을 통해 시의 정책적 기능과 대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공간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 이행임.
- 관련분야의 수행실적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적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시 직영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통해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민간위탁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22.2)에서도 “적정”으로 의결⁹⁾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옥지원센터는 변화되는 기능에 맞추어 거점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동안 이 곳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이 북촌문화센터로 이관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종합적 검토와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수인력이 일시에 해고되지 않도록 일정 비율 이상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현재 수탁기관(사단법인 문화다움)의 인력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교육시설의 특성상 과도하고 잦은 시간 외 근무로 인해, 그간 이직이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위탁사무 전반

9) 조직담당관-2168(2022.2.25.), “2022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한옥정책과)”

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¹⁰⁾도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북촌문화센터(계동 105) 및 한옥지원센터는 SH공사 소유의 공공한옥으로 서울시와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임.¹¹⁾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서울특별시(Kmac), 2019.6, pp.5~7.

11) 북촌문화센터 : 586,319천원
- 2002년 : 468,160천원
- 2018년 3월 보증금 추가 : 27,741천원
- 2018년 11월 보증금 추가 : 90,418천원
한옥지원센터 : 237,323천원
- 2016년 : 237,323천원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40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 공공한옥 중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를 통합하여 사무 민간위탁 추진해왔으나, 정책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필요에 따라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정책수행시설로 전환하여 직영하고, '북촌문화센터'는 대시민 대상시설로써 전문적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개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

나. 위탁개요

- 대상시설 : 북촌문화센터
- 소재지 : 종로구 계동길 37 외 1
- 시설규모 : 대지 1,131.5㎡, 연면적 362.32㎡
- 위탁기간 : 2년 11개월('23.2.1. ~ '25.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 소요예산(안) : 578백만원 ※ '22년 예산(통합운영): 800백만원

다. 주요 위탁내용

- 북촌의 장소성 및 한옥 콘텐츠를 반영한 체험, 공연, 전시, 교육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민과 함께하는 공정관광 캠페인, 마을여행, 해설프로그램 운영
- 전통(현대)공예, 생활예술 등 관련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 시민한옥학교, 한옥캠프, 북촌인문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민간위탁 사업 일부 변경 신규 위탁 추진계획 방침('22.2.9.)

마. 필요성

- '20년부터 시작한 북촌도시활성화사업 본격 착수에 따른 정책적 거점시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공간 매입 확보 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한옥 시설 활용이 타당
- '17년 2월부터 북촌문화센터와 함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온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현재 북촌활성화사업 일부 기능과 민간위탁사업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어 공간의 활용도 혼재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하
-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북촌활성화사업 거점시설로 전환 하여 정책시설로 직영하는 한편, 북촌문화센터는 민간위탁 지속 추진 통해 북촌 체험·홍보·교육시설로써 전문적 관리 및 활용 강화

바. 기대효과

- 시의 정책적 기능과 대시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능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북촌 및 한옥의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적극적인 시설 운영 통해 북촌문화센터 서비스 질 향상 등 시민만족도 제고 지속

3. 추진일정

가. 추진경위

- 제270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6. 9월
- 최초 위탁 운영 개시(3년) : '17. 2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82.18점) : '19. 6월
- 제290회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별도보고 : '19. 11월
- 재계약 운영 개시(3년) : '20. 2월~
- 사업 일부 변경 및 신규 위탁 방침 수립 : '22. 2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 : '22. 2월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	사무	신규(공모)	2년 11개월	적정

나. 향후계획

- 제306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 : '22. 3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2. 6월
- 신규위탁 공모 및 수탁사 선정 : '22. 7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수인계 : '22. 9월
- 북촌문화센터 신규 수탁기관 운영 개시 : '23. 2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조직담당관 심의('22.2.22.)

- '22년 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한옥정책과 건축자산문화팀 김성찬(☎2133-5580)